



畜産法 改正法律

- ... 지난 74년 12월 1일 제90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법률인.....○
- ...畜産法에 對한 租稅減免規制法 改正法律, 『飼料管理法 改正法律, 畜産物加工.....○
- ...處理法 改正法律, 獸醫師法 改正法律을 긴급 입수하여 新·舊法을 比較 기재.....○
-하니 양축가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편집자 주>.....○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법률

法名稱	條 文	內 容	備 考	法名稱	條 文	內 容	備 考
所得稅法	第6第(稅額의 減免).	第2項 第3號 讓渡所得金額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5年以上 繼續하여 經營한 牧場을 移轉할 目的으로 土地와 建物을 讓渡하므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第3項 綜合所得金額中 畜産業所得이 있는때 全額免除...事業을 開始한 해와 翌年度부터 6年間 半額免除...3年間	74定期國會에서 改正	에 對한 減免)		翌年度부터 6年間 半額免除...3 "	
	附則 第3條	(畜産業에 對한 所得稅의 免除에 關한 適用例)...이法 施行當時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는 1969年 1월 1일에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6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法 施行後 畜産業을 開始하는 者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		第59條의 3(非課稅 所得)		다음 各號의 所得에 對하여는 特別 賦課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8號:大統領令에 定하는 바에 의하여 5年以上 繼續하여 經營한 牧場을 移轉할 目的으로 土地와 建物을 讓渡하므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74定期國會에서 改正
法人稅法	第24條의 2(畜産業	全額免除...事業을 開始한 해와		附則(68 12.17)		①(施行日)이 法은 196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 (適用例) 第24條의 2의 規定은 1978年 12月 31日 以前에 終了하는 事業年度分까지 이를 適用한다. ④ (") 이 法 施行當時의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內國法人에 對하여는 1969年 1月 1일부터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24條의 2의 規定을 適	

法名稱	條文	內容	備考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의 6(畜産業에 對한 所得稅의 免除)	用한다. ⑤(〃)이 法 施行後에 畜産業을 營爲하는 內國法人에 對하여는 實제로 그 事業을 開始한 날에 不拘하고 1969年 1月 1日부터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24條의 2에서 規定하는 法人稅의 減免期間을 適用하여 이를 減免한다, ○綜合所得을 畜産業에 投資하는 경우 投資金額이 比率에 따라 免除 ○課稅標準確定申告期間終了日(다음 年度 2月 1日부터 2月末까지 申告)로 부터 2年內에 投資 ※ 1975年度에 申告하는 綜合所得分에 關하여는 得前의 例에 依한다.	74定期國會에서 字句修正
	第9條(財産稅의 免除)	第4項 畜産業者가 畜産業에 直接 使用하는 牧場用土地 및 建物에 對하여는 財産稅를 免除한다,	

法名稱	條文	內容	備考
第10條(取得稅의 免除)		다만 農水産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의 要件을 갖추어야 할 畜産業者가 그 要件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基準의 要件을 갖춘 畜産業者가 同要件을 갖춘날로부터 5年內에 牧場用土地 및 建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目的 事業以外의 事業에 轉用하거나 讓渡한 때에는 그 部分에 對하여 이미 免除된 財産稅를 即時 追徵(不可抗力의 인 事由로 轉用 또는 讓渡하는 경우를 除外한다) 第2項 다음 各號의 不動産에 對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한다. 畜産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牧場用土地 및 建物로서 그 事業에 직접 使用하는 것. 但書는 前 第9條 參照	74定期國會에서 改正
			74定期國會에서 改正

<參考表>

목장의 시설기준과 면세범위

사 업 별	사 성 축 두 수	면 제 범 위
한우, 육용우, 사육사업	20두	두당 1,150평방미터
유우사육사업	20〃	〃 2,300 〃
양, 사슴 사육사업	200 〃	〃 230 〃
토끼 사육사업	100 〃	〃 13 〃
토끼(친칠라 및 밍크를 포함한다) 사육사업	500 〃	수당 3 〃
가금 사육사업(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한다)	1,000 〃	〃 3 〃

사료관리법 개정법률

新 法	舊 法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 則</p> <p>第1條(目的) 이 법은 飼料의 需給調節, 價格의 安定 및 品質改良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業의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칙</p> <p>제 1 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조절, 가격의 안정 및 품질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① 이법에서 “飼料”라 함은 單味飼料와 配合飼料를 말한다.</p> <p>② 이 법에서 “單味飼料”라 함은 畜産用으로 使用하는 穀類 및 同副産物 薯類 粕類 魚粉 기타 農水産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p> <p>③ 이 법에서 “配合飼料”라 함은 乙種以上の 單味飼料를 適當한 比率로 配合 또는 化合한 것을 말한다.</p>	<p>제 2 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료”라 함은 양축용으로 사용하는 옥수수·수수·맥류·양곡부산물·박류·어분(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이 법에서 “배합사료”라 함은 2종이상의 사료를 적당한 비율로 배합한 것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2 章 飼料의 需給調節</p> <p>第3條(飼料의 需給 및 價格調節)</p> <p>① 農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需給 및 價格調節用으로 飼料를 買入 輸入 또는 賣渡하게 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飼料의 買入과 輸入 및 賣渡에 있어서는 糧穀管理法 및 農水産物價格維持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사료의 수급조절</p> <p>제 3 조(사료의 수급조절) ① 농수산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절용으로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매입과 매도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第4條(飼料對策委員會의 設置等)</p> <p>① 飼料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에 關한 事項中 農水産部長官이 委囑하는 事項에 關한 諮問에 應하게 하기 위하여 農水産部에 飼料對策委員會를 둔다.</p> <p>② 飼料對策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제 4 조(사료대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농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에 사료대책위원회를 둔다.</p> <p>② 사료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p>
<p>第5條(飼料의 用途外使用禁止)</p> <p>調節用飼料는 農水産部農官이 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養畜用 以外로 賣渡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 5 조(조절용 사료의 용도 이외 사용의 금지) 조절용 사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자는 그 조절용 사료를 양축용 이외로 매도하지 못한다.</p>
<p>第5條의2(買占賣惜의 禁止)</p> <p>飼料賣買業을 營爲하는 者는 暴利를 目的으로 飼料를 正當한 理由없이 販賣忌避하여서</p>	

新 法	舊 法
는 아니된다.	
<p>第6條(飼料의 需給 및 價格調節에 對한 特別措置) 農水産部長官은 飼料의 需給 및 價格調節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飼料對策委員會의 諮問을 거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飼料의 賣渡方法을 定하거나 賣渡價格을 指定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輸入飼料 2. 配合飼料 3. 輸入糧穀의 副産物 4. 政府管理糧穀의 副産物(新設) 5. 前 名號에 準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飼料(新設) 	<p>제 6 조(사료의 수급조절에 대한 특별조치) 농수산부 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료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의 매도방법을 정하거나 매도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절용 사료 2. 수입양곡의 부산물 3. 정부에서 매도한 양곡의 부산물
<p>第 3 章 飼料의 品質改良</p> <p>第7條(飼料工場의 許可 및 登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販賣를 目的으로 配合飼料의 製造業을 營爲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農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은者가 그 製造施設을 變更하고자 할때에는 農水産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그 施設을 讓渡한거나 賃貸 또는 廢止할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定하는 期間안에 農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販賣를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定하는 單味飼料의 製造業을 營爲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製造施設을 갖추어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p>제 3 장 사료의 품질개량</p> <p>제 7 조(배합사료공장의 등록) ① 사료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배합사료공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 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p> <p>② 농수산부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검사하여, 시설기준에 도달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전항의 사료제조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第7條의2(施設基準)</p> <p>第7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飼料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以下“施設基準”이라 한다)의 適合한 製造施設을 갖추어야 한다.</p>	
<p>第 8 條(飼料成分量의 告示)</p> <p>農水産部長官은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p>	<p>제 8 조(사료성분량의 고시) 농수산부 장관은 배합사료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종류별로 사료</p>

新 法	舊 法
<p>飼料의 品質保障을 위하여 種類別로 飼料成分量의 最少와 最大의 限度를 定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성분량의 최소와 최대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第 9 條(飼料成分의 登錄) 飼料의 製造業者는 前條의 規定에 의한 種類別의 飼料成分量에 대하여 農水産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農水産部長官이 定하는 登錄을 받아야 한다.</p>	<p>제 9 조(사료성분의 등록) 사료의 제조업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의 사료성분량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p>
<p>第10條(登錄證의 交付) ① 農水産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飼料成分量을 檢査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限度안의 것이라 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登錄하고 登錄證을 交付하여야 한다.</p>	<p>제10조(등록증의 교부) ①농수산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료성분량을 검사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 안의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p>
<p>第11條(飼料의 減量比率) 飼料의 減量比率는 農水産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1조(사료의 감량비율) 사료의 감량비율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第12條(飼料의 成分量 保證票) 飼料의 製造業者는 製造된 飼料에 登錄된 成分量 保證票를 붙여야 한다.</p>	<p>제12조(사료의 성분량보증표) 사료의 제조업자는 제조된 배합사료에 등록된 성분량보증표를 붙여야 한다.</p>
<p>第13條(虛偽記載行使의 금지) 누구든지 成分量 保證票에 虛偽의 事實을 記載하여 行使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3조(허위기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성분량 보증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4조(이물혼합의 금지) 사료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료에 그품질이 저하되거나 위해로운 물질을 혼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4조(이물혼합의 금지) 사료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료에 그 품질이 저하되거나 가축에 유해로운 물질을 혼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5조(사료의 검사) 농수산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료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득하는 사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사료의 검사) 농수산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료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지하는 사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6조(사료의 판매제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8조에 규정된 사료로서 성분량 보증표</p>	<p>제16조(사료의 판매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는 판매하지 못한다. 1. 성분량보증표가 없는 배합사료 2. 성분보증표의 내용과 상이한 배합사료</p>

新 法	舊 法
<p>를 붙이지 아니한 사료. 2. 성분량보증표의 내용과 상이한 사료.</p>	
<p>제 4 장 감 독 제17조(감독) 농수산부장관은 수요 및 수요조절용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와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사료의 수요조절 및 업무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 4 장 감 독 제17조(감독) 농수산부장관은 조절용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에 대하여 사료의 수급조절 및 업무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8조(보고와 검사) 농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수요조절과 품질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 및 가치조절용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필요한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8조(보고와 검사) 농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과 품질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절용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장부 기타 필요한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9조(증표의 제시) 제15조 및 제18조의 경우에 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9조(증표의 제시) 제15조 및 전조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2(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농수산부장관은 사료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 1. 시설기준에 미비한 제조시설을 농수산부장관이 제시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 2. 노후한 조제시설을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한내에 대체하지 아니할 때. 3. 허가를 받은후 1년내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때. 4. 제조시설을 완비한 후 6개월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6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중지한 때. 5.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명령에 위반한 때. 6. 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p>	
<p>제20조(영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 등) ① 농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p>	<p>제20조(행정처분) ①농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p>

新 法	舊 法
<p>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필요한 경고를 발하거나 3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료성분량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를 할때. 2. 성분량 보증표의 내용과 상이한 사료를 제조할 때. 3. 성분량 보증표의 내용이 등록된 사항과 상이한 때. 4. 성분량 보증표를 붙이지 아니한 사료를 판매할 때. 5. 사료제조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p>② 농수산부장관은 수급 및 가격조절용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가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 및 가격조절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는 3월이상 1년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분량보증표의 내용과 상이한 사료를 제조한 때.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있어서 허위의 보고를 한 때. 3. 사료공장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p>②농수산부장관은 조절용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월 이상 1년이하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절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20조의2(자금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료가격의 규정과 사료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제21조(직권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제 5 장 벌 칙</p> <p>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의2,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방법 또는 가 	<p>제 5 장 벌 칙</p> <p>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양축용 이외로 매도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新 法	舊 法
<p>격조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매도한자.</p> <p>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업을 영위한자.</p> <p>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사료를 판매한자.</p> <p>5. 제15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자.</p> <p>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p> <p>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에 위반한자.</p>	<p>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배합사료공장을 경영한 자.</p> <p>4. 제13조·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부 칙	부 칙
<p>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미사료를 생산제조및 판매한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3.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한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다만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7조 제3항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p>	<p>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0일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배합사료공장을 경영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p>

월간 양계 구독 안내

지난 한해 동안 월간양계를 아껴주신 구독자 여러분과 스폰서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애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월간양계는 아래와 같은 구독회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① 월회비(권당) : 200원

② 년회비 : 2,000원

③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44-28 축산회관4층 대한양계협회

④ 대체구좌 : 519272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법률

新 法	舊 法
<p>第1條(目的) 이 법은 獸畜의 屠殺과 畜産物의 加工處理 및 檢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畜産物의 衛生的인 管理와 그 品質의 向上을 圖謀하여 畜産物의 健全한 發展에 奇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본법은 수축의 도살과 축산물의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며 가축위생상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定義等) 이 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獸畜”이라 함은 소, 말, 羊, 돼지, 닭, 오리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動物을 말한다. 2. “畜産物”이라 함은 獸肉, 乳, 獸肉加工品, 乳加工品 및 卵加工品을 말한다. 3. “獸肉”이라 함은 食用을 目的으로 한 獸畜의 精肉, 內藏, 기타 部分을 말한다. 4. “乳”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한 牛乳와 羊乳의 原乳, 加工乳 및 脫脂乳를 말한다. 5. “獸肉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한 햄, 쏜세지, 베이컨, 乾燥貯藏肉, 肉漬物, 冷凍肉, 기타 獸肉을 主原料로하여 製造한 加工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乳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한 脫脂煉乳, 還元牛乳, 粉乳, 脫脂粉乳, 버터, 치즈, 醱酵乳와 기타 乳를 主原料로 하여 製造한 加工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卵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卵을 處理加工한 것을 말한다. 8. “屠畜場”이라 함은 食用에 供할 目的으로 獸畜을 屠殺解體하기 위한 施設을 設備한 場所를 말한다. 9. “乳處理場”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한 乳를 濾過, 小分, 脫脂 또는 殺菌하기 위한 場所를 말한다. 10. “畜産物 加工場”이라 함은 獸肉加工品, 乳加工品 및 卵加工品을 製造하기 위한 施設을 設備한 場所를 말한다. 11. “搾乳場”이라 함은 牧場에서 搾乳를 目 	<p>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수축이라 함은 우·마(당나귀와 노새를 포함한다)·양·돈을 말한다.</p> <p>②본법에서 축산물이라 함은 수육·유·수육가공품·유가공품을 말한다.</p> <p>③본법에서 수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수축의 정육·내장 기타의 부분을 말한다.</p> <p>④본법에서 유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우유와 양유의 전유 또는 탈지유를 말한다.</p> <p>⑤본법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축을 도살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p> <p>⑥본법에서 유치리장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를 여과 소분·탈지 또는 살균하는 조작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p> <p>⑦본법에서 축산물가공장이라 함은 수육가공품 또는 유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p> <p>⑧본법에서 수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햄소시지·베이컨·건조저장육·육지방 기타 수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을 말한다.</p> <p>⑨본법에서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연유·탈지연유·환원우유·탈지분유·버터·치즈 기타 유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을 말한다.</p>

新 法	舊 法
<p>의으로 하는 施設로서 農水産部令으로 정하는 衛生施設을 設備한 場所를 말한다.</p> <p>12. “檢査員”이라 함은 이 法の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를 行하기 위하여 大線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가 獸醫師중에서 任命 또는 委囑한 者를 말한다.</p>	
<p>第2條의2(適用의 制限)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獸畜중 닭, 오리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獸畜에 對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農水産部長官이 指定하는 地域안에서 販賣를 目的으로하는 獸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3條(作業場) ①獸畜의 殺屠 解體와 乳의 處理獸肉 乳 및 卵의 加工行爲는 이 法の 規定에 의한 屠畜場 乳處理場 또는 畜産物 加工場(以下 “作業場”이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로 獸畜을 屠殺 解體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負傷, 難産, 産褥麻痺, 急性鼓脹症 등으로 因하여 獸畜을 屠殺하여야 할 不可避한 事由가 있을 때. 2. 學術 研究用에 供할 때 3. 遠洋航路를 航行하는 船舶內에서 船員船客의 食用에 供하고자할 때. 4.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돼지와 羊을 自家消費에 供하고자 할 때. <p>②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獸畜을 屠殺解體한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③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屠殺, 解體한 獸肉은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用에 供할 수 있다.</p>	<p>제3조(축산물검사원) ①본법에서 규정한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서울특별시·도·구·군에 축산물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전항의 검사원은 수의사 중에서 임명한다.</p> <p>③검사원의 검사방법·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第4條(作業場の 設置許可) ①作業場을 設置 經營하고자 하는者는 道知事の 設置許可를 받</p>	<p>제4조(작업장의 경영허가) ①도살장·유처리장 또는 축산물가공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p>

新 法	舊 法
<p>아야 한다. 作業場의 施設 또는 場所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作業場의 施設基準 기타 施設許可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水産部令으로 정한다 이 境遇에 施設基準에 관하여는 保健社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p>	<p>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作業場의 위치·부지 및 건물 의 평수, 구조 설비를 표시한 서류·도면과 作業장부근의 약도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農수산부령의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한다.</p> <p>②작업장의 경영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건물의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여 作業場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사의 착수와 준공기한을 기재하고 구조시방서 및 공사비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전항의 규정은 作業場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를 준용한다.</p>
<p>第 5 條(竣工檢査) ①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場 設置 許可를 받은 者가 作業場의 設置를 完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道知事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作業場은 이를 使用할 수 없다.</p>	<p>제 5 조(작업장의 건축, 개축 등의 허가) 作業場의 경영자는 作業장을 건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공사의 착수와 준공기한을 기재하고 구조시방서 및 공사비예산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第 6 條(作業場의 讓渡 等) ① 作業場을 相續받거나 讓渡 또는 讓受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②作業場의 經營者는 作業場을 休止再開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제 6 조(작업시설의 사용인가) 作業場의 경영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다.</p>
<p>第 7 條(畜産物의 加工處理 方法 等) 獸畜의 屠殺 解體 乳의 處理 및 衛生等級과 畜産物의 加工方法은 農水産部令으로 정한다.</p>	<p>제 7 조(작업장의 시설의 설비기준) ①작업장의 위치, 시설의 종류·구조·규모 기타의 시설의 설비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農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비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전2조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 8 條(手數料) 獸畜의 屠殺, 解體 또는 乳處理에 對하여 徵收하는 手數料에 관한 事項은 農水産部令으로 정한다.</p>	<p>제 8 조(작업장경영의 상속) 作業場의 경영은 상속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新 法	舊 法
<p>第9條(施設利用의 拒否禁止) 屠畜場 또는 乳處理場의 經營者는 正確한 理由없이 屠殺, 解體 또는 乳處理의 請求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9조(신고사항) 작업장의 경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의 호주 또는 가족이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장의 경영을 개시하거나 폐지 또는 휴업하였을 때 2. 작업장의 경영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었을 때 3. 작업장경영자의 주소·성명에 이동이 있을 때
<p>第10條(獸畜의 檢査) 屠畜場에서 屠殺 解體하는 獸畜과 搾乳하는 乳牛 또는 乳羊은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員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p>	<p>제10조(허가취소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작업장의 위치의 변경이나 사용의 정지, 시설의 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경영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第11條(虐待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利得을 目的으로 獸畜에 對하여 強制로 물을 먹이는 등 重量 또는 容量을 늘리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1조(도축장 외에서의 수축의 도살해체금지) ① 누구든지 도축장 또는 수육가공장 아닌 장소에서 수축을 도살하거나 해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나 난산·산욕마비나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절박도살을 필요로 할 때 2. 원양항로나 근해항로를 항해하는 선박내에서 선원·선객의 식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축을 도살 해체 할 때 3. 학술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축을 도살 해체할 때 4. 자가용에 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돼지를 도살 해체할 때 5. 전 각호의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 <p>③전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하였을 때에는 수축의 종류·연령·도살의 사유, 장소와 일시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육을 식용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도축장 아닌 장소에서는 해체하지 못한다.</p>

新 法	舊 法
<p>第12條(畜産物の 検査) ① 作業場에서 處理加工한 畜産物은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検査員의 検査를 받아야 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検査를 받지 아니한 畜産物은 이를 作業場 밖으로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2조(생축의 검사) 도살장에서는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축은 도살해체 하지 못한다.</p>
<p>第13條(合格表示 等) ① 検査員은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検査한 結果 検査에 合格한 畜産物에 對하여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畜産物과 包裝에 合格表示를 하여야 한다.</p> <p>② 畜産物可工場의 經營者는 畜産物 加工品의 容器에 保健社會部長官과 協議하여 農水産部令으로 정하는 事項을 表示하여야 한다</p>	<p>제13조(유의 처리방법) 유(乳)처리장의 經營者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수산부령의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유의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第14條(不良品の 販賣禁止) ① 食肉販賣業者 食肉運搬業者 또는 飲食店營業者는 検査를 받지 아니한 畜産物과 變質한 畜産物(以下 “不良品”이라 한다)을 貯藏, 運搬, 販賣, 陳列 또는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農水産部長官은 食肉販賣業者 食肉運搬業者 또는 飲食店 營業者가 第1號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該 營業의 許可官廳에 對하여 그 營業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의 停止를 시킬것을 要請할 수 있으며 許可官廳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限 그 要請을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4조(수수료) 작업장(축산물가공공장을 제외한다)의 經營者는 수축의 도살 해체나 처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도살해체료나 처리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第15條(需給調節) 農水産部長官은 公衆衛生上 危害가 發生할 優慮가 있거나 畜産振興에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獸肉과 原乳의 需給調節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p>	<p>제15조(시설이용의 불허금지) 도살장 또는 유처리장의 經營者는 正當한 이유없이 도살해체나 처리의 청구를 거부하지 못한다.</p>
<p>第16條(報告 等) ①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作業場 또는 搾乳場의 經營者로부터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検査員으로 하여금 作業場 또는 搾乳場에 出入하여 帳簿 기타 書類 및 作業狀況을 検査하게 할 수 있다.</p> <p>② 道知事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不良品을</p>	<p>제16조(도살 해체처리의 금지명령 등)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검사원의 검사의 결과 수축이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가축위생상의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축산물가공장을 제외한다)의 經營者에 대하여 수축의 도살 해체 또는 처리의 금지를 명하거나</p>

新 法	舊 法
<p>調査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檢査員으로 하여금 食肉販賣業所 食肉運搬業所 또는 飲食店營業所에 出入하여 不良品の 貯藏, 運搬, 販賣, 陳列 또는 使用狀況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行하는 檢査員은 그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關係人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p>	<p>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p>
<p>第17條(不良品の 廢棄處分) 農水産部長관 또는 道知事は 不良品에 對하여 檢査員으로 하여금 이를 廢棄押收 또는 收去하게 하거나 不良品の 所有者 또는 所有者에 對하여 公衆衛生上 危害가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p>	<p>제17조(미검사축산물의 반출금지) 누구든지 작업장에서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 하고는 축산물을 작업용 외에 반출하지 못한다.</p>
<p>第18條(作業場 設置許可의 取消) ①道知事は 作業場이 다음 各號의1에 該當한 때에는 作業場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作業場의 使用를 停止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作業場의 設置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1年 以內에 作業場을 設置하지 아니한 때. 2. 作業場 竣工檢査를 받은 날로부터 6月以內에 正當한 理由없이 作業場을 使用하지 아니한 때.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아니한 때. 4.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5. 기타 이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에 違反한 때. <p>②道知事は 作業場에 公衆衛生上 重大한 危害가發生하였거나 公益을 害할 優慮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作業場의 設置許可를 取消하거나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作業場의 位置 또는 施設의 變更이나 施設의 使用停止를 命할 수 있다.</p>	<p>제18조(합격표시) 검사의 결과 합격이 된 축산물과 포장에는 농수산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p>
<p>第19條(포상금)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屠畜場이 아닌곳에서 獸畜을 屠殺, 解體한 者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獸畜에 對한 虐待行爲를 한 者를 主務官廳 또는 搜查機關에 申告한者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不良品을 主務官廳에 申告한者에 대하여</p>	<p>제19조(불량품의 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이를 불량품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가 없는 축산물 2. 부패한 축산물 3. 폐사한 수축의 수육

新 法	舊 法
<p>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支給한다.</p>	<p>② 검사원은 전항의 불량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소비자에 대하여 가축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한 조치를 명하거나 스스로 이를 포기 압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第20條(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作業場 또는 搾乳場의 施設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p>	<p>제20조(보고입검) 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착유장의 경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작업장 또는 착유장에 임검하여 장부 기타 서류 및 작업상황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 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第2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作業場이 아닌 곳에서 獸畜에 屠殺, 解體, 乳의 處理, 畜産物의 加工行爲를 한 者 또는 그 行爲를 教唆하거나 幫助한 者. 2. 第1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獸畜에 對한 虐待行爲를 한 者 또는 그 行爲를 教唆하거나 幫助한 者. 3. 第4條 第1項, 第10條, 第12條 또는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p>제21조(검사) 수육판매업자는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한 수육으로서 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면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第2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の 懲役 또는 50萬원 以下の 罰金의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5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違反한다. 2.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獸畜의 屠殺, 觸體, 乳의 處理 또는 畜産物의 加工行爲를 한 者. 3. 第15條 또는 第13條 第2項의 規定에 의 한 命令에 違反한 者. 	<p>제22조(보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업장 또는 착유장의 시설비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第2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6月以下の 懲役 또는 30萬원 以下の 罰金의 處한다.</p>	<p>제23조(벌칙)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p>

新 法	舊 法
1. 第3條 第2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手數料를 徵收한 者. 3. 第9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16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 忌避 또는 妨害하거나 虛偽의 報告를 한 者. 5.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형에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條(再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1條 乃至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 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제24조(앞과 같음)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 規定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앞과 같음) 제16조 또는 제19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20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기피 또는 허위의 보고나 진술을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規定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規定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從前의 法令에 의하여 作業場의 經營許可 또는 使用認可를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場이 設置許可 또는 竣工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未達되는 施設은 이 法 施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適합하도록 補完하지 아니할 때에는 道知事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52년 11월 조선총독부령 제184조 도장규칙과 단기 4261년 경기도령 제3호 식육영업취체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작업장(수육판매업을 포함한다)의 경영허가는 본법의 規定에 의하여 받은 허가로 본다. 다만, 본법의 規定에 의한 시설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법의 規定에 의한 시설의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하면 그 경영허가를 취소한다.

수의사법 개정법률

新 法	舊 法
<p>第1條(目的) 이 法은 獸醫師의 機能과 獸醫 業務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業의 發展과 公衆衛生의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본법의 목적) 본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업무의 걱정을 보장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상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獸醫師"라 함은 獸醫 業務를 擔當하는 者로서 農水産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2. "動物"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家禽·꿀벌·魚貝類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動物을 말한다. 3. "動物診療業"이라 함은 動物의 疾病을 診療 또는 豫防하거나 斃獸檢案을 行하는 業을 말한다. 4. "動物病院"이라 함은 動物診療業을 行하는 場所로서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許可를 받은 診療機關을 말한다. 	<p>제2조(면허)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에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3.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가에서 수의사 면허를 받은자.
<p>第3條(職務) 獸醫師는 動物의 診療(斃獸檢案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및 保健과 畜産物의 衛生檢査에 從事함을 그 職務로 한다.</p>	<p>제3조(면허부여의 제한) 다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의사 면허를 주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 자. 2. 정신병자 또는 마약 중독자. 3. 수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p>第4條(免許) 獸醫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水産部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 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2. 農水産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에서 獸醫師 免許를 받은 者 	<p>제4조(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① 수의사가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 할때 또는 그 면허의 취소신청이 있을때는 농림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한다.</p> <p>② 수의사가 그 업무에 관한 부재행위가 있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킨다.</p>
<p>第5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獸醫師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精神病者, 心身薄弱者 2. 聾者·啞者·盲者 	<p>제5조(수의사 명부) 농림부에 수의사 명부를 비치하고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p>

新 法	舊 法
<p>3.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p> <p>4. 獸醫師로서 職務를 遂行하는데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不具, 廢疾者와 麻藥 기타 有毒物質의 中毒者</p> <p>5. 禁錮以上の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p>	
<p>第 6 條(免許의 登錄) ① 農水産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한 때에는 免許에 관한 事項을 免許臺帳에 登錄하고 그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證은 이를 他人에게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의 交付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水産部令으로 정한다.</p>	<p>제 6 조(면허의 교부) 농림부장관은 제2조의 면허를 하였을 때는 수의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第 7 條(國家試驗委員會) ① 獸醫師 國家試驗을 行하기 위하여 農水産部長官이 所屬下에 獸醫師 國家試驗委員會를 둔다.</p> <p>② 獸醫師國家試驗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 7 조(기타사항) 면허의 신청, 수의사 명부의 등록, 정정 또는 말소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하여서는 농림부령이 이를 정한다</p>
<p>第 8 條(獸醫師 國家試驗) ① 獸醫師 國家試驗은 每年 獸醫師國家試驗委員會가 이를 施行한다.</p> <p>② 獸醫師國家試驗은 動物의 診療에 必要한 獸醫學과 獸醫師로서 갖추어야 할 公衆衛生에 관한 知識 및 機能에 대하여 行한다.</p> <p>③ 獸醫師國家試驗의 實施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 3 장 수의사 국가시험</p> <p>제 8 조(국가시험) 수의사 국가시험은 가족의 진료상에 필요한 수의학 및 수의사로서 구비하여야 함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p>
<p>第 9 條(應試資格)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는 者는 第5條 各號의 1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 한다.</p> <p>1. 教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獸醫學을 專攻하고 獸醫學士學位를 받은 者</p> <p>2. 農水産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大學에서 獸醫學을 專攻하고 獸醫學士位받은 者</p> <p>3.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部長官이 認定하는 國家 以外의 外國에서 獸醫師免許를 받은 者</p>	<p>제 9 조(국가시험위원회) 수의사 국가수험을 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수의사 국가시험 위원회를 둔다.</p>

新 法	舊 法
<p>第10條(診療業務) 獸醫師가 아니면 動物의 診療를 그 業務로 할 수 없다. 다만, 魚貝類의 診療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수험자격) 수의사 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수험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이를 졸업한 자. 2.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자. 3.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이외의 외국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자. 4. 수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p>第11條(診療의 拒否禁止) 動物診療業을 營爲하는 獸醫師는 動物을 診療要求를 받은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1조(기타사항) 수의사 국가시험 위원회, 수의사 국가시험 및 수의사 예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12條(診斷書 등) ① 獸醫師는 自己가 診療 또는 檢案하지 아니하고는, 診斷書나 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하며 劇·毒藥 및 生物學的 製劑의 處方, 投藥을 하지 못한다. 다만, 魚貝類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診療 중 斃死한 境遇에 交付하는 斃死診斷書는 다른 獸醫師로부터 交付받을 수 있다. ③ 獸醫師는 그가 診療 또는 檢案한 動物에 對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의 交付要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업 무</p> <p>제12조(업무) 수의사가 아니면 가축(여기에 가축이라 함은 牛, 馬, 羊, 豚, 山羊, 犬, 兎, 猫家禽類를 말한다)의 진료 및 축산물의 위생검사를 업무로 할 수 없다.</p>
<p>第13條(診療簿 및 檢案簿) ① 獸醫師는 診療簿 또는 檢案簿를 備置하고 診療 또는 檢案한 事項을 記錄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診療簿 또는 檢案簿는 3年間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p>	<p>제13조(신고) 수의사가 진료업무를 개업하였을 때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료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진료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당해진료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또한 같다.</p>
<p>第14條(申告) 獸醫師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實態와 就業狀況 등을 農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제14조(진단서, 검안서 및 투약) 수의사는 자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또는 극, 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투약을 하지 못한다. 단 진료중 폐사할 경우에 교부하는 폐사진단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p>

新 法	舊 法
<p>第15條(診療技術의 保護) 獸醫師의 診療行爲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干涉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5조(업무) 진료를 업무로하는 수의사는 진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p>
<p>第16條(器具等의 優先供給) 獸醫師는 診療行爲에 必要한 器具, 藥品, 其他 施設 및 材料를 優先的으로 供給받을 權利를 가진다.</p>	<p>제16조(진료부, 검안부) ① 수의사는 진료 또는 검안하였을 때는 그 사항을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지체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는 전항의 진료부 및 검안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第17條(開設) ① 獸醫師는 이 法에 依한 動物病院을 開設하지 아니하고는 動物診療業을 行할 수 없다. ② 動物病院은 다음 各號에 1의 該當되는 者가 아니면 이를 開設할 수 없다. 1. 獸醫師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3. 動物診療業을 目的으로 設立한 法人 4. 民法 또는 特別法에 依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獸醫師가 動物病院을 開設하고자 한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第2項第3號 및 第4號에 該當되는 者가 動物病院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 道知事가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農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제17조(과대광고) 수의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학위칭호 또는 전문과목 이외에는 그 기능요법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없다.</p>

新 法	舊 法
⑤動物病院의 施設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8條(休業·廢業의 申告) 動物病院의 開設者는 動物診療業을 休業하거나 廢業한 때에는 遲滯없이 管轄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세의 면제) 가축진료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第19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動物病院이 아닌 動物病院의 名稱 또는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공수의</p> <p>제19조(배치, 임명 및 자격) ① 가축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에 공수의를 배치한다. ②공수의는 지방장관의 대신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이를 임명한다. ③전항의 공수의는 본법에 규정된 수의사라야 한다.</p>
第20條(診療報酬) 動物病院의 診療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水産部令으로 定한다.	제20조(업무) 공수의는 배치지에 거주하여 그 지방에서 진료업무를 개설하고 소관지방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p>第21條(公獸醫) ①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動物診療業務의 適正을 圖謀하기 위하여 獸醫師에게 다음 各號의 業務를 委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動物의 診療 2. 動物疾病의 證查研究 3. 動物 傳染病의 豫防과 治療 4. 動物의 健康診斷 및 斃獸檢案 5. 動物의 保健增進과 環境衛生 6. 其他 動物診療에 關하여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가 指示하는 事項 <p>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診療의 委囑을 받은 獸醫師(以下 “公獸醫”라 한다)는 動物病院을 開設하고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指揮監督을 받아 委囑받은 業務를 行한다. ③公獸醫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事項은 農水産部令으로 定한다.</p>	<p>제21조(업무) 공수의는 다음의 업무에 종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전염병의 진료와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건강진단 및 폐사의 검안에 관한 사항. 4. 가축의 보건증진과 환경 위생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항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장관이 지시한 사항.
第22條(公獸醫 手當 및 旅費) 公獸醫에 對하여는 手當과 旅費를 支給한다.	<p>제22조(수당, 출장비) ① 농림부장관은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소관지방장관이 공수의에게 출장을 명할 때는 서울특별시 및 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新 法	舊 法
<p>第23條(設立) ① 獸醫師는 獸醫業務의 適正과 獸醫學의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獸醫師會를 設立하여야 한다.</p> <p>② 獸醫師會는 法人으로 한다.</p> <p>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獸醫師會가 設立된 때에는 獸醫師는 當然히 獸醫師會의 會員이 된다.</p>	<p>제23조(기타사항) 공수의의 업무수행상 준수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 및 공수의의 정원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第24條(設立許可) 獸醫師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 기타 必要한 書類를 農水産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設立許可를 받아야 한다.</p>	<p>제 6 조 수의사회</p> <p>제24조(목적) 가축진료업무의 적정한 수의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는 중앙의료사회와 서울특별시 또는 각 도 수의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p>
<p>第25條(支部) ① 獸醫師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 釜山市 또는 道에 支部를 設置하여야 한다.</p> <p>② 獸醫師會가 支部를 設置한 때에는 그 支部의 責任者는 遲滯없이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제25조(경비의 보조)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가축보건향상과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수의사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 또는 각도 수의사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다.</p>
<p>第26條(民法의 準用) 獸醫師會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제 7 장 벌 칙</p> <p>제26조(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가 아니고 가축의 진료를 업무로 한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p>
<p>第27條(協助義務) 獸醫師會는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로부터 動物診療 및 公衆衛生의 向上에 관한 協助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소 또는 검안서를 교부한거나 극, 독약 또는 생물학적제제의 처방 또는 투약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소의 개업, 휴업, 폐업 또는 그 소재지의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자.
<p>第28條(監督) 農水産部長官은 獸醫師會가 定款으로 정한 事業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動物保健向上에 障礙가 되는 行爲를 할 때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協助要請에 응하</p>	<p>부 칙</p> <p>제28조(시행일) 본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p>

新 法	舊 法
지 아니한 때에는 定款의 變更 또는 任員의 改選을 命할 수 있다.	
<p>第29條(經費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動物 保健向上과 公衆衛生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獸醫師會의 運營에 必要인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p>	<p>제29조(기득권의 인정) 본법시행전에는 수의사 면허를 받은자 또는 수의사자격을 가진자는 본법에 의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자 또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자로 간주한다.</p>
<p>第30條(指導와 命令) ①農水産部長官은 動物의 診療施策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公衆衛生上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獸醫師 또는 動物病院에 대하여 必要한 指導와 命을 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人獸共通傳染病의 防疫와 診療를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農水産部長官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p>	<p>제30조(신고) 본법시행 제 가족의 진료업무를 개업하고 있는자는 본법시행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당해 진료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p>
<p>第31條(敎育) ① 農水産部長官은 獸醫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을 實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敎育에 必要한 經費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할 수 있다.</p>	<p>제31조(저촉 법령의 폐지) 조선 수의사회 규제(단위 4270년 9월부터 제132호)은 이를 폐지한다.</p>
<p>第32條(報告 및 業務監督) ①農水産部長官은 獸醫師 또는 動物病院에 대하여 必要한 報告를 命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業務狀況 施設 또는 診療法 및 檢案簿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行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p>	<p>제32조(수험자격의 인정) 본법 시행전에 수의사 시험의 일부에 합격한자로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본법시행 후 3년간은 국가시험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p>
<p>第33條(免許의 取消 및 資格停止) ①農水産部長官은 獸醫師가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하며 第3號 또는 第4號에 該當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5條第1號 乃至 第4號의 規定에 該當하게 된 때 2. 禁錮以上の 刑의 宣告를 받은 때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停止處分 期間中에 獸醫業務를 行하거나 3回以上 資格</p>	

新 法	新 法
<p>停止 處分을 받은 때</p> <p>4. 免許證을 貸與한 때</p> <p>②農水産部長官은 獸醫師가 다음 各號의1에 該當할 때에는 1年以內의 範圍안에서 免許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다.</p> <p>1. 獸醫師로서의 品位를 甚히 損傷시키는 行爲를 한 때</p> <p>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p> <p>3. 其他 이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p>	<p>第39條(罰則) 第6條 第2項·第11條 乃至 第13條·第17條·第19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p>
<p>第34條(朝設登錄의 取消等) 農水産部長官은 動物病院이 다음 各號의1에 該當할 때에는 그 動物診療業을 停止하거나 開設登錄 또는 開設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p> <p>1. 開設登錄 또는 開設許可를 한날로부터 3月 以內에 正當한 理由없이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한 때</p> <p>2. 無資格者로 하여금 診療行爲를 한 事實이 있을 때</p> <p>3. 第17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 또는 變更許可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廢業의 申告를 그 事實이 發生한 後30日 以內에 하지 아니한 때</p> <p>4. 施設基準에 未達된 때</p> <p>5. 其他 이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p>	<p>附 則</p>
<p>第35條(誇大廣告의 禁止) 獸醫師 또는 動物病院은 診療業務에 관하여 虛僞 또는 誇大한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6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第36條(權限委任) 農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p>	<p>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獸醫師免許를 取得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獸醫師免許를 取得한 者로 보며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獸醫師資格을 가진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 以內에 獸醫師免許申請을 하여야 하며 그 期間內에 獸醫師免許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는 獸醫師의 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第37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獸醫豫備試驗에 合格한 者는 이 法에 의한 獸醫師 國家試驗의 應試資格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第38條(罰則)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の 罰金에 達한다.</p>	<p>④(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家畜의 診療業務를 開業하고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動物病院의 開設登錄 또는 開設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다만, 이法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未達되는 때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 以內에 이 法에 의한 施設基準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違反되는 때에는 道知事는 開設登錄 또는 開設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p>
	<p>⑤(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公獸醫로 任命된 者는 이 法에 의한 公獸醫로 본다.</p>
	<p>⑥(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中央獸醫師는 이 法에 의한 獸醫師會로 본다.</p>
	<p>⑦(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中央獸醫師會의 代表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 以內에 이 法에 의하여 定款을 變更하고 農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p>